

〈제1문〉 중기계를 생산하는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갑은 골절 등의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받았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은 갑이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급여지급결정을 받은 사실을 들어 갑에 대한 급여지급결정을 취소하였고, 갑은 급여지급결정의 취소처분서를 2021. 1. 7. 직접 수령하였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갑에게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였다. 한편, 갑은 위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2021. 5. 7.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1) 위 무효확인소송에서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1. 문제 상황

갑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급여지급결정취소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요건사실(갑이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급여지급결정을 받은 사실)에 대해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2. 입증책임의 의의

3. 급여지급결정취소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

(1) 학설

(2) 판례

(3) 검토

무효인 처분은 취소인 처분보다 법률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강한 것이므로 원고부담설은 부당하며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인 법률요건분류설이 타당하다.

(4) 설문

판례(원고부담설)에 따른다면 급여지급결정취소처분의 요건사실의 부존재는 원고인 갑이 입증해야 하지만,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르면 급여지급결정취소처분의 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해 행정청인 근로복지공단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제1문〉 중기계를 생산하는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갑은 골절 등의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애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받았다. 그 후 근로복지공단은 갑이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급여지급결정을 받은 사실을 들어 갑에 대한 급여지급결정을 취소하였고, 갑은 급여지급결정의 취소처분서를 2021. 1. 7. 직접 수령하였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갑에게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였다. 한편, 갑은 위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2021. 5. 7.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 갑은 추가적으로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가?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1. 문제 상황

갑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급여지급결정취소처분 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추가로 급여지급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병합한다면 행정소송법 제10조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요건과 관련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청구의 병합의 의의

3. 청구의 병합의 형태

- (1) 객관적 병합
- (2) 주관적 병합

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의 요건

5. 설 문

(가) 다른 요건은 특히 문제되지 않지만,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될 본체인 취소소송 등이 적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병합하는 관련청구 자체도 전치절차, 제소기간, 당사자적격 등의 소송형태에 따른 소송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나) 갑은 급여지급결정의 취소처분서를 2021. 1. 7. 직접 수령하였고 2021. 5. 7. 급여지급 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급여지급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병합하려 하기 때문에 병합하려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당초 무효확인소송 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던 아니면 병합시를 기준으로 하던 제소기간은 도과하였다.

(다) 따라서 급여지급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병합될 수 없고 각하될 것이다.

〈제1문〉 근로복지공단은 갑이 실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급여지급결정을 받은 사실을 들어 갑에 대한 급여지급결정을 취소하였고, 갑은 급여지급결정의 취소처분서를 2021. 1. 7. 직접 수령하였다. ... 갑은 위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2021. 5. 7.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갑이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은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의 '법령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가?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1. 문제 상황

(가)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 않음이 일반적인 논리이다. 다만,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칠 수 있다.

(나) 설문은 갑이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이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의 위법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바 이는 항고소송의 소송물 및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의 본질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

(1) 의의

(2) 기판력의 범위

3.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 학설

(2) 검토

행위위법설 특히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원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의 청구인용판결은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청구기각판결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제한적 긍정설).

4. 설문

제한적 긍정설에 따르면, 설문에서 갑은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받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후소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은 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의 '법령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제2문〉 X사장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으로 불이익을 입은 갑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위법을 인정하였다. 다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까지도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사실관계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형성되는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여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갑이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1. 문제 상황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위법함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하였는데, 원 처분은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고 재결은 기각재결이라 원칙적으로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은 없지만 만일 행정심판위원회가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다면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19조 단서와의 관계상 그러한 기각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2. 재결취소소송의 개념

- (1) 재결소송의 의미
- (2) 원처분주의

3. 재결(취소)소송의 사유

- (1)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의 의미
- (2) 주체·절차·형식의 위법
- (3) 내용의 위법

4. 설 문

기각재결은 원칙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내용상 위법은 없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였다면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갑은 원처분인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외에도 기각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할 수도 있다.

〈제3문〉 국가공무원 갑은 업무시간 중 민원인으로부터 골프접대 등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권자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행정청은 취소소송의 계속 중 갑이 뇌물수수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중 골프접대를 받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것도 징계사유의 하나라고 소송절차에서 주장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허용되는지 설명하시오.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1. 문제 상황

갑이 행정청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취소소송 계속 중에 피고인 행정청은 당초 사유인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는 사유로 추가할 수 있는지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관련해서 문제된다.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개념

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인정 여부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인정범위

- (1) 시간적 범위
- (2) 객관적 범위
- (3) 재량행위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효과

6. 설 문

(가) 추가하려는 사유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는 사유가 해임처분 당시에 존재하였고, 사실심변론종결 시까지 시정이 처분사유를 변경한다면 시간적 범위는 만족한다.

(나) 소송물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당초 사유인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는 사유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 태양·결과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행정청은 해임처분취소소송 계속 중에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는 사유로 추가할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